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05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이준석 · 천하람 · 이주영
우재준 · 김대식 · 김용태
이종배 · 최형두 · 주호영
김상욱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법률상담 제공, 교원공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이 무고성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교원은 무고성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교권이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송 지원 시 교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 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
되,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1조).
- 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판단

제21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활동과”를 “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정당한 교육활동과”로, “법률 상담을”을 “법률 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구성 및 운영에”를 “구성·운영 및 소송 지원에”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을 하려면 미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소송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송 지원을 한 후 지체 없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학생의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판단
2.·3. (생략)	3.·4.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u>교육활동과</u>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u>법률 상담을</u> 제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 <u>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u> <u>정당한 교육활동과</u> -----

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법률 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을 하려면 미리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소송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송 지원을 한 후 지체 없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구성·운영 및 소송 지원에---

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학생의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